

동두천시상폐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용도지역변경(일반주거→자연녹지)의견청취에관한건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01. 5. 30 동두천시장이 제출

나. 회부일자 : 2001. 6. 5

다. 상정일자 : 제10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질의답변

제5차 본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96년 5월 지구지정된 상폐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 도시계획 사업의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주민 스스로가 도시주거환경을 자발적인 참여속에 조성토록 하고자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 대다수가 사업시행에 대한 강한 반발로 사업자체의 존폐를 검토하는 상황에 직면, 또한 상폐토지구획정리사업은 면적규모(90,390㎡)가 협소하고 공공공익이 높아 사업의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따라서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원을 최소화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상폐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폐지하고 본 사업지구의 도시계획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당초 용도지역인 자연녹지로 환원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상폐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용도지역 결정(변경)

◦ 사업지구 : 90,390㎡

(일반주거 80,140㎡, 자연녹지 10,250㎡ → 자연녹지 90,390㎡)

3.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4. 토론요지

“ 없 음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